

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

< 주의 사항 >

※ 사업 진행 중 **투자기업의 귀책 사유**로 인한 차량 말소 불가 등 **사업 취소 사유 발생 시, 공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**

절 차	주 의 사 항
재정평가	▶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필요서류 확인 후 등록 금융사에서 재정평가 실시 ▶ 여신실행이 불가능할 경우, 사업신청을 취소 하고 차기 사업공고 시 재신청
현장평가	▶ 개별 투자번호 확인 및 차대번호, 기계장치의 모델명 및 제작연월 확인 서류 지참 - 지참 서류: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, 제조사 제작증명서 (기계장치에 명판이 없는 경우)
협약체결	▶ 기한 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⇨ 사업 참여 취소
결정통보	▶ 결정통보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의 사항은 소급 적용 불가

< 자주 묻는 질문(FAQ) >

1 기존 차량의 처리 방법?

-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기존 설비를 폐기 또는 수출 등 말소처리를 하여야 함
※ 설비의 압류·저당에 의해 말소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, 공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

2 재정지원사업(클린 등) 지원을 받고 사후기술지도 기간 중 이라면?

- 기존 차량 말소 전까지 관할 일선기관으로 '자진취소 요청 →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 → 안전투자 혁신사업 진행' 하여야 함
※ 보조·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」 참조

3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지 여부?

- 사후기술지도는 지원받은 익년도부터 3년간 실시됨에 따라, 해당기간 동안 산재 보험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고, 소멸 또는 해지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

4 사업 진행 중, 사업장 또는 이동식 위험기계기구 양도·양수 가능 여부?

- 해당 경우가 발생할 경우, 사업 취소 및 차기에 재신청하여야 함

5 협약체결 후,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?

- 우선선정 사업장의 자금결정 이후,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함
- 투자기업의 귀책사유(단순변심 등)가 아닌 경우로 제한하며 결정된 보조금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신청 후 공단 승인 시 변경 가능
※ 공급업체, 금융사 등 협약의 당사자 변경 불가 ⇨ 사업 취소 후, 차기에 재신청